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26년 5월)

1) 채용개요

연번	모집분야	채용인원	계약기간	근무지
1	폐기물계근관리	1	2026-06-25 ~2027-12-25	경기도 하남시 광암동 39-4 일원 계근대 등 ※현장여건에 따라 공구 내 계근대 추가 설치 및 이동으로 근무 위치 변경 발생 가능성 있음 (☎ 031-790-9347)

- * 금회 채용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닙니다.
- * 계약 시작일은 예정일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지원 모집분야 근로개시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을 먼저 체결할 경우 근로계약의 효력은 지원 모집분야 근로개시일부터 발생하며,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 *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15조(채용금지) 제1항 제3호의 제한연령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제한연령 도달일을 근로계약 만료일로 봅니다.
- * 별도의 합숙소가 제공되지 않으며, 근무지는 향후 사업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업무내용

모집분야	주요업무 및 직무내용(기술서)
폐기물계근관리	○ 건설공사 현장의 폐기물 관련 보조 업무 (경무현장 포함) - 건설폐기물 1, 2차 선별확인 시 사진촬영 및 기록유지 - 폐기물 반출 시 계량 확인 및 올바른 시스템 입력 - 현장 내 폐기물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현장 순찰 - 그 밖에 폐기물 계근업무 관련 감독 지시사항 등

3) 자격요건

모집분야	자격요건
공통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사규정」 제9조(채용금지)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15조(채용금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폐기물계근관리	○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 자격증 소지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사규정」 제9조(채용금지)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15조(채용금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인사규정」 제9조(채용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10.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5.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자를 포함)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15조(채용금지)

1. 「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 채용금지 대상인 자
2. 공사에서 근로자로 퇴직한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파견 및 용역 근로자로서 본래의 직무 외에 기간제근로자와 동일 직무를 수행한 자 포함)
 - * 경과기간은 종전 퇴직일로부터 신규 근로개시일까지
3. 만 18세 미만인 자(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현장실습 등을 나온 경우는 예외로 함) 또는 만 60세(현장관리직, 폐기물관리직은 만 65세) 이상인 자
4. 그 밖에 공사의 근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4) 급여조건

구 분	급 여 조 건			
폐기물계근관리	○ 월 임금 이백오십일만오백팔원(₩ 2,510,508)			
	계	기본급	직무수당	정기상여금
	2,510,508	2,066,150	100,000	344,358

- * 실지금액이 아닌 세금,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하지 않은 세전 금액임
- * 그 외의 사항은 공사의 「기간제근로자의 보수에 관한 지침」에 의함

5) 근무조건

구 분	근 무 조 건
폐기물계근관리	○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주5일 근무 * 근무시간 조정 가능 (예시: 1일 8시간(07:00~16:00)) ○ 근무지 : '1) 채용개요' 참조 (향후 사업여건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 복지후생 등 그 외의 사항은 공사의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에 따름

6) 채용절차

지원서 접수	➤	서류심사	➤	면접전형	➤	최종선정
5.13.(수) 10:00 ~5.26.(화) 13:00		발표일 : 6.10.(수)		면접일 : 6.16.(화)		발표일 : 6.23.(화)

○ 전형방법

구 분	내 용																	
서류전형 (1차심사)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평가기준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 평가요소 : 자기소개(30), 지원동기(30), 경험 및 경력(40), 가점(20)																	
	- 점수배점																	
	<table><tr><th rowspan="2">계</th><th rowspan="2">자기 소개</th><th rowspan="2">지원 동기</th><th rowspan="2">경험 및 경력</th><th colspan="3">가점</th></tr><tr><th>경력</th><th>자격</th><th>특별우대</th></tr><tr><td>100+가점</td><td>30점</td><td>30점</td><td>40점</td><td>5점</td><td>5점</td><td>10점</td></tr></table>	계	자기 소개	지원 동기	경험 및 경력	가점			경력	자격	특별우대	100+가점	30점	30점	40점	5점	5점	10점
	계					자기 소개	지원 동기	경험 및 경력	가점									
경력		자격	특별우대															
100+가점	30점	30점	40점	5점	5점	10점												
- 선발인원 : 5명																		
- 동점자 : 전원합격																		
- 선정자 발표 및 면접안내 : 6.10.(수) 17:00 이후 개별통보(문자메시지)																		
* 당일 18시까지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통신장애일 수 있으니 반드시 NH 경기북부지역본부 채용담당자에게 유선확인(☎02-6363-0461) 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책임지지 않음																		

면접전형 (2차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실시 - 평가기준 : 의사소통능력(30), 문제해결능력(40), 조직적응력(30), 가점(10) - 점수배점			
	계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가점 특별우대
	100+가점	30점	40점	30점
				10점
	- 여건에 따라 온라인 화상면접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면접 방법은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예정 - 개별면접을 기본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그룹면접 가능 - 합격인원 : 1명 - 예비합격자 : 3인(순위확정 선발) - 합격자 선정 : 면접점수 합계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되 합계점수 7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불합격) 처리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부여 시 가점을 포함한 점수(장애인 가점 제외) - 동점자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서류전형우수자* 순에 따름 * 서류전형 점수가 동일한 경우 [경험 및 경력 > 지원동기 > 자기소개 > 서류전형 외부위원 평균점수]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자 - 최종 합격자 발표 : 6.23.(화) 17:00 이후 개별통보(문자메시지) * 당일 18시까지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통신장애일 수 있으니 반드시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채용담당자에게 유선확인(☎02-6363-0461) 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책임지지 않음			

7) 우대사항

모집분야	우대대상		해당사항	가점
공통	특별 우대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 지원대상자	각 전형별 만점(100점) 의 5% 또는 10% 가점 부여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 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장애인	각 전형별 만점(100점) 의 5% 가점 부여
		※ 특별우대 우대사항은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부여 *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우대(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3인이하 모집분야는 가점 미적용)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 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3인이하 모집분야에도 적용) *** 단, 취업지원 대상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 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하여 평가함		

모집분야	우대대상		해당사항	가점
폐기물계근관리	일반 우대	경력	해당 직무 관련 2년 이상 경력자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5% 가점 부여
		자격	CAD 및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주1)}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5% 가점 부여

○ ^{주1)} 전산응용제도기능사, CAT(CAD실무능력평가 1·2급), ATC 캐드마스터(1·2급), 컴퓨터활용능력(1·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1·2급), MOS MASTER, ITQ정보기술자격

※ 일반우대사항(자격)은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부여

8) 지원서 접수 등

○ 접수기간 : 2026.5.13.(수) 10:00 ~ 2026.5.26.(화) 13:00까지

○ 접수방법 : 공사홈페이지(www.lh.or.kr) 인터넷(온라인) 접수

* 접속경로 : LH홈페이지 > 새소식 > 채용정보 > 비정규직 채용공고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 본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면접 당일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면접전형을 온라인 화상면접으로 진행하는 경우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확인을 위한 증빙 서류는 면접 전 공지된 시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면접전형 시 제출(지참) 서류

모집분야	제출대상	제출서류
공통	신분증(필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사본 1부 (진위확인을 위한 원본 지참)
	특별우대(해당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폐기물계근관리	자격요건(필수)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일반우대(해당자)	▶ 해당 직무분야 관련 경력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1부
		▶ CAD 및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는 경력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기재되어야 하며, 반드시 발급 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서류여야 함

다만, 발급기관 서식에 당사 요청사항(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등)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붙임 서식 [경력(재직) 증명서]로 작성 및 제출

9) 블라인드 채용 및 기타사항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블라인드 위반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제출 서류는 자격 및 우대요건 등의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되며, 심사위원 등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 등의 허위 기재, 구비서류 미제출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공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이며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2개월 이내 퇴사 시 별도 채용공고 없이 예비합격자 순서대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채용비리로 피해자 발생 시 당사 피해자 구제절차에 의거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번 채용의 불합격자는 채용관련 비위 또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팩스(0503-6994-6076) 또는 E-mail(minyoung11@lh.or.kr)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처리안내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내용 검토 및 답변 처리
[이의신청 처리 예외 사유]
 - 1) 금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이의제기와 상관없는 채용제도, 절차 등에 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 2) 응시자 정보, 출제위원·평가위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지적재산권(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3) 그 밖에 상기에 준하는 사항

- 우리 공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인사 청탁을 금지합니다. 부정 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사규 등에 따라 해당 지원자 사전배제, 합격 후에도 불합격처리, 재응시 자격을 제한하며, 관련 기관에 해당사실 통보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채용서류의 반환

- 채용에 탈락한 지원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합니다.

* 다만, 동 법률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E-mail로 제출된 경우, 또는 지원자가 公社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 청구방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작성 후 본인 서명 및 날인하여 E-mail(minyoung11@h.or.kr)로 청구
- 청구기한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간
- 기타사항
 -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반환서류는 E-mail 수신일로부터 14일 이내 등기우편으로 발송(소요비용은 公社가 부담)하며, 반송되는 경우 재발송하지 않습니다.

11) 문의처

- (접수관련) LH 경기북부지역본부 경영지원팀 기간제근로자 채용 담당자
(전화 : 02-6363-0461)
- (직무관련) 현장별 담당자 [상기 '1) 채용개요' 연락처 참고]

2026년 5월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장 (직인생략)

[별지 제9호서식] 경력(재직) 증명서(제17조 관련)

경력(재직) 증명서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증 명 사 항	재 직 기 간		소속 및 직위(급)	담당업무내용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비고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예) 모집분야와 관련된 경력을 구체적으로 기재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기 관 명: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발 급 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 padding: 5px;">소 속</td> <td style="height: 40px;"></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직 위</td> <td style="height: 40px;"></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연락처</td> <td style="height: 40px;"></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성 명</td> <td style="height: 40px; text-align: right;">인</td> </tr> </table>						소 속		직 위		연락처		성 명	인
소 속													
직 위													
연락처													
성 명	인												
※ 담당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할 경우 관련분야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기관명 및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발급자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사업장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